

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7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03. 16.	회부연월일	2022. 03. 16.

1. 제안이유

-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별 적용대상 할인을 변경 및 노인 등 대중교통의 이용지원 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이용자인 아동·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통하여 교통복지 정책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‘아동·청소년’ 과 ‘대중교통운영자’ 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.
- 나.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·청소년 등 지원대상자를 신설함.
- 다.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.
- 라.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에 관한 사항(별표)
-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 따라 제2조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(수권유족 1명)의 할인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, 아동·청소년(만 6세 이상 ~ 만 18세 이하)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(1일 3회)에 대한 사항을 신설 등 별표를 개정함.

3. 검토의견

- 대중교통 수단별 적용대상 할인을 변경 및 노인 등 대중교통의 이용지원 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이용자인 아동·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통하여 교통 복지정책 실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23조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3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,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9조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9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